

의안번호	2208538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4.
추계번호	25A1233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 (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)	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함 <u>1. 산업단지의 안전관리</u> <u>2. 산업단지의 공해관리</u> <u>3. 산업단지의 환경관리</u> <u>4. 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이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(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시·도지사 등에게 산업단지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의 지도·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
 - 현행법에는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재량으로 지도·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(3333-309)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 - －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(3333-309)사업 현황은 [표1]과 같음

[표1] 2025년도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(3333-309) 사업예산 현황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(- 내역사업명)	2023년 결산	2024년 예산	2025년 예산안
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	3,706	2,926	2,774
- 산업단지 발전기반강화	2,926	2,926	2,774
-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설립지원서비스제공	780	-	-

자료: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(세부사업설명자료)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은 관리주체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등으로 하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재량사항에서 관리권자의 의무로 변경함
- 개정안에 따라 관리대상의 확대, 안전관리체계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관리 등의 대상 확대 범위나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
 - 참고로 현재 시행령에는 관리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·시행과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도 사항에 대해 규정¹⁾하고 있음

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58조(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)

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·공해관리·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2.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
3.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안전관리·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
2.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
3.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
4.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
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